

요약

I. 서론

-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는 일종의 윈윈전략(Win-Win Strategy)으로 시공자의 창의적인 발상을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 장려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액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유하는 제도임.
- 국내의 경우도 지난 1992년에 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효과적이지 못하였음.
- 이미 법제화된 설계 VE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관련 제도인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임시방편적 보완이 아닌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건설 VE 인센티브 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국내 건설 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II. 건설 VE 인센티브의 이론적 고찰

- 국내의 건설 VE 인센티브의 유사제도로는 기술개발보상제도, 신기술지정제도, 예산성과금 제도 등이 있음. 이러한 유사 제도의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는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됨.
 - 기술개발보상제도: 적은 인센티브, 보상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정 미흡, 장기간의 처리절차 등
 - 신기술지정제도: 홍보부족, 책임문제에 따른 발주기관의 소극적 태도,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의 불명확, 무단사용에 대한 권리구제조항의 미비, 평가 전담부서 및 평가절차, 기준의 미비 등

- 예산성과금제도: 홍보 부족, 장기간의 처리기간, 처리 및 심사절차의 복잡성, 평가기준의 미비 등의 문제 등
-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답변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건설 VE 인센티브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마련과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Ⅲ. 국내외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 비교·분석

- 한국, 미국, 일본의 관련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다음의 표를 보면, 일본은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략적인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미국은 행정관리예산청의 VE 고지, VE의 체계적 적용에 관한 법률, VE에 관한 연방조달규칙 등 각종 법령 및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 관련 조항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또한 산하 정부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VE 인센티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조항들이 잘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구 분	내 용		FAR	GSA	DOD	UDOT	일 본	한국	
일 반	VECP 정의		●	●	●	●	●	●	
	제출 서류		●	●	●	●	-	●	
	인센티브 조항의 명시		●	●	●	●	-	-	
처 리	사전 검토		●	●	●	●	-	-	
	처리 절차		●	●	●	●	●	●	
	주체별 업무		●	●	●	●	-	●	
	처리 기한		45	21(45)	45	14	14	30(90)	
절감액	산정식		●	●	●	●	-	-	
	VECP 개발비용 포함		●	●	●	-	-	-	
	분배율 (시공사)	DBB	총액	55	55	55	50	50	50
			실비정산	25	25	25	-	-	-
		DB	총액	-	50	-	-	-	-
			실비정산	-	25	-	-	-	-
	유지관리비 절감액 분배		20	20	20	20	-	-	
분배 시기		-	●	●	●	-	-		
기 타	사용권		●	●	●	●	●	-	
	하도급 계약		●	●	●	●	-	●	
	클레임		●	●	●	●	-	-	
	재시공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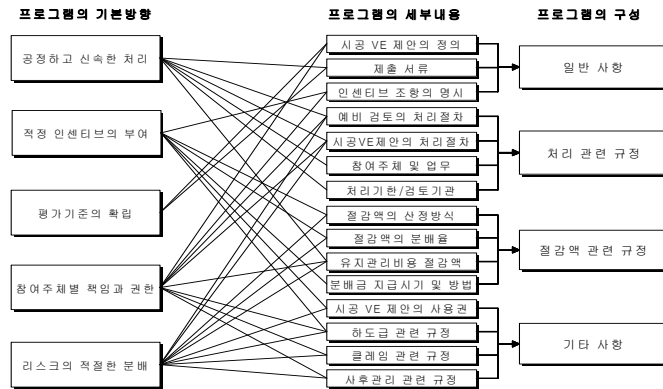
참고: “●”는 해당 규정 있음, “-”는 해당 규정 없음.

- 특히 미국의 VE 인센티브 관련 제반 규정들은 VECP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로 국내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개발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IV. 국내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정부행정기관, 발주 기관, 시공사, 기타 전문가 등 구성된 8인을 대상으로 각 조항별 면담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한 것임.

- 제안하는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 구축의 기본방향은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적정 인센티브의 부여, 평가기준의 확립, 참여주체별 책임과 권한, 리스크의 적절한 분배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다음의 체계에 따라 작성하였음.



- 이러한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마련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측면의 개정이 필요함.

- 기본법령의 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정이 필요함.
 - 당해 절감액 산정시 시공자의 시공 VE 제안 개발비용 및 발주자의 심사비용의 보상
 -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에서도 시공자에 대한 절감액 분배를 허용 및 시공자의 시공 VE 제안 개발비용 및 발주자의 심사비용의 보상
-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개선방향: 본 방안은 크게 기존규정의 개정과 기존 규정의 통합·신설, 새로운 규정의 신설 등 3가지가 될 수 있음.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정: 기존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규정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안한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맞게 세부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안임.
- 기술개발보상제도 및 신기술지정제도 등의 연계 및 보완하는 안
- 시공 VE 제안에 관한 신 규정의 신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시공 VE 제안의 처리에 관한 회계예규(안)'을 제안함(부록 참조).

V. 결론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건설산업에 활용한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시공 VE 활동이 가능할 것임. 이는 결국, 시공업체의 수익성 및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발주청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음.
- 하지만, 이의 연구결과가 국내 건설환경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각 주체들의 VE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임. 즉, 건설 VE 인센티브 제도는 참여주체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
- 기존 건설개발보상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담당 공무원의 문책 문제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극복되어야 하며,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성과를 확장하기 위한 후속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음.
 - 계약유형별 절감액의 적정 분배율 산정에 관한 연구
 - 유지관리비용 분석 및 절감액의 적정 분배율 산정에 관한 연구
 - 분배금 지불방식 선정에 관한 연구
 - 각 발주기관 특성에 적합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개발 등